

A blue-tinted world map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slide,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main title.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The lower half of the slide features a background image of a person's hands typing on a laptop keyboard, overlaid with a network diagram of white nodes and lines.

2019. 10. 31.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완

Contents

1

도입배경

2

주요시행방향

3

시범사업 심사기준

4

질의응답

I.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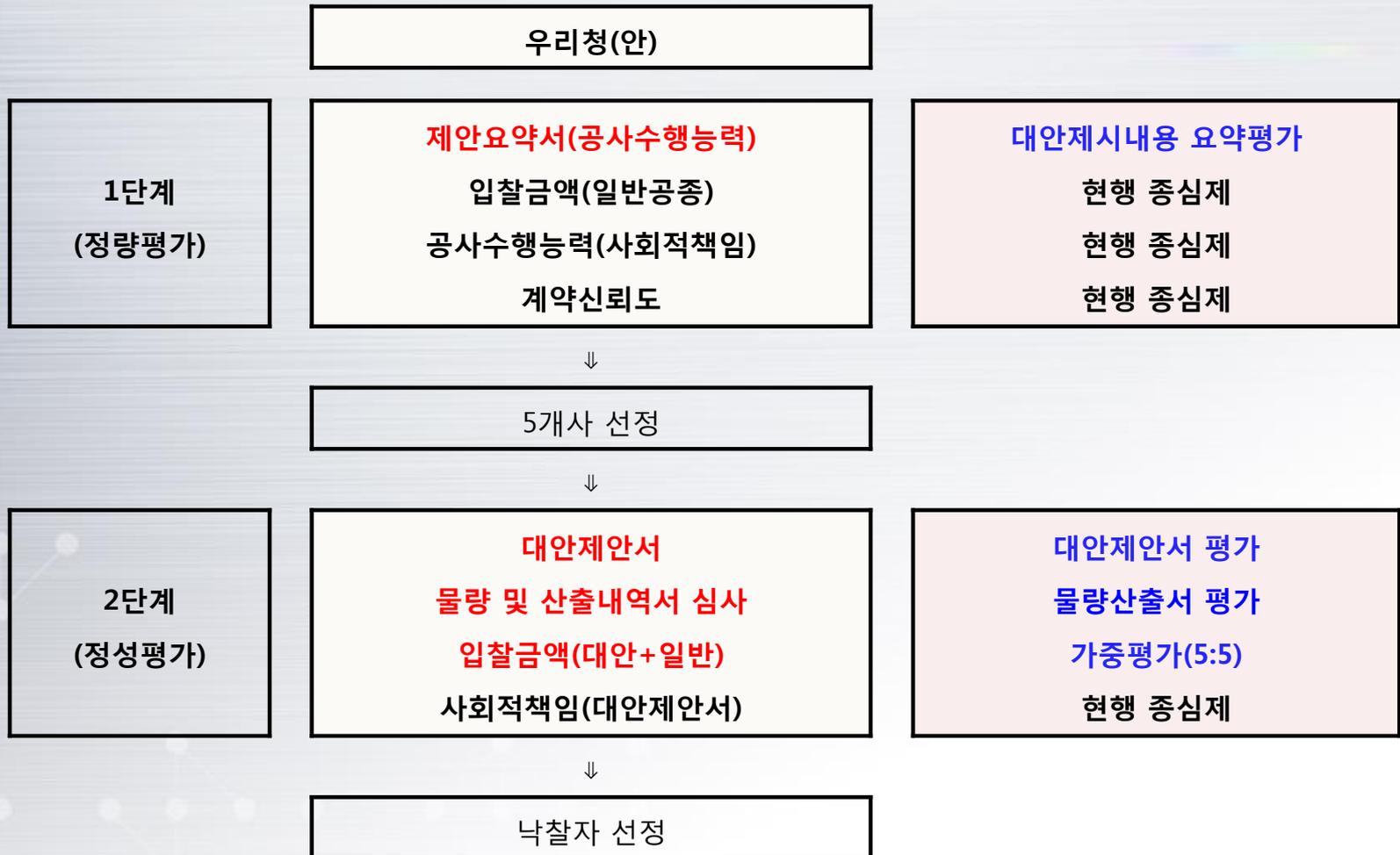
❖ 기재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19.1.4, 이하 ‘계약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술중심의 낙찰제도 도입을 발표

-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적정성 제고

❖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II. 주요시행방향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 1단계 심사 상위 5개사 선정 → 2단계 심사 : 최고점인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심사) 공사수행능력(제안요약서), 입찰금액, 계약신뢰도 합산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평가방법
1단계 심사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현)중심제
		역량	17점	
		일자리	1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제안요약서	-2점	신규 평가방법 (간략한 정성평가)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일반공종)	50점	(현)중심제
		하도급계획(일반공종)	-2점	(현)중심제
		단가심사(일반공종)	-4점	
		소 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현)중심제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점수			100점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 (2단계 심사) 대안제시 적정성, 입찰금액을 평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평가방법
2단계 심사	대안제시 적정성 (50점)	대안제안서 (50점)	제안서심사	50점	신규 평가방법(정성평가) 사회적책임 점수는 1단계점수 활용
			사회적책임	가점 2점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심사		-2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일반공종)		25점	1단계 점수 활용
		입찰금액(대안제시허용공종)		25점	신규 평가방법
		하도급계획(대안제시공종)		-2점	(현) 중심제(단, 사후제출)
		소 계		50점	
	점수		100점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1) 대안제시 허용범위

- 교량, 방파제 등 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안제시 허용공종 지정
 - ✓ 전체 공사에 대해 대안제시를 허용하기에는 입찰자 및 수요기관 부담이 많아 일부 주요공종으로 제한
 - ✓ 대안제시 허용공종 이외는 일반공종으로 현행 종심제와 동일

2) 내역서 배부 및 작성·제출

- (대안제시허용공종) 물량내역서를 배부하지 않고 설계도면, 시방서를 배부하여 입찰자가 입찰내역서(공종·물량·규격·단가)를 직접 작성·제출
- (일반공종) 현행 종심제(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우리청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3) 입찰서류 제출

- 1단계 평가자료 및 입찰금액은 입찰 시 제출, 대안제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서류는 입찰이후 제출
 - ✓ 공사수행능력(제안요약서 포함), 산출내역서 (전체+일반+대안제시허용공종) 등은 입찰 시 제출
 - ✓ 2단계 심사대상자는 입찰이후 대안제시적정성 (대안제시, 시공계획,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평가자료 제출

4) 제안요약서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제시 요약서(제안요약서)를 평가
 - ✓ 입찰자는 대안제안서의 요약자료인 제안요약서*를 제출 (시공성, 기능성, 디자인, 공기단축 제안내용)

* 표지, 목차, 간지 등 모두 포함하여 A4용지 20쪽이내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4) 제안요약서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요약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제안요약서 (40)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안전, 품질, 시공 등을 고려한 시공방법 개선 등 시공성 제안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절대 평가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안전, 품질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안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외부환경과의 조화 및 실용성 등 디자인 제안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예정공사기간 대비 공기단축 제안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규격(A4용지) 위반과 페이지 수 위반 (모든 용도를 포함 20페이지 초과)	-10점	
합계		40	

- ✓ 규격(A4용지) 위반 및 페이지수(20페이지) 위반 시 감점(-10점)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4) 제안요약서 평가

-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 36점 이상은 감점 없음 (40점 만점)

평가 점수	36점 이상	36점 미만 35점 이상	35점 미만 34점 이상	34점 미만 33점 이상	33점 미만 32점 이상
심사 점수	0	-0.001	-0.003	-0.006	-0.01
평가 점수	32점 미만 31점 이상	31점 미만 30점 이상	30점 미만 29점 이상	29점 미만 28점 이상	28점 미만
심사 점수	-0.02	-0.05	-1.0	-1.5	-2.0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5) 대안제시 방법

- 구조물 최종 형상(모양, 단면 등)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 대안 제시
 - 입찰자는 목적물의 시공성, 기능성, 디자인, 공기단축을 제시
 - 주요구조물의 형상과 내부 구조(철근배근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 시 주요구조물을 안내
 - (관급자재) 대안제시 허용공종 범위내 관급자재는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입찰자가 대안제시 가능
 - 계약이후 공사수행 시 관급자재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분리(설계변경)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6) 대안제시 적정성 평가방법

- 대안제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대안제시 (60)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안전, 품질, 시공 등을 고려한 시공방법 등 시공성 제안의 적정성	수(15), 우(12), 미(9), 양(6), 가(3)	상대 평가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안전, 품질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안의 적정성	수(15), 우(12), 미(9), 양(6), 가(3)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외부환경과의 조화 및 실용성 등 디자인 제안의 적정성	수(15), 우(12), 미(9), 양(6), 가(3)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예정공사기간 대비 공기단축 제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	수(15), 우(12), 미(9), 양(6), 가(3)	
시공계획 (40)	전체공사의 시공관리(공정 및 주요 구조물의 시공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상대 평가
	전체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전체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전체공사의 환경 및 자재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합계		100	

- ✓ 상대평가 시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우) 등급 이상은 최대 3개사에 점수부여 가능하며, 3개사 중 (수) 등급은 최대 1개사 가능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6) 대안제시 적정성 평가방법

- 점수산정 : 상대평가로 심사하고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 90점 이상은 만점 부여

평가 점수	90점이상	90점미만 87.5점이상	87.5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2.5점이상	82.5점미만 80점이상
심사 점수	50	49	48	46	44
평가 점수	80점미만 77.5점이상	77.5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2.5점이상	72.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심사 점수	40	36	30	20	0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7)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평가방법

- 물량산출 및 내역 작성의 적정성평가(심사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대안제시 허용공종(관급금액 포함)의 물량산출 및 근거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절대 평가
	대안제시 허용공종(관급금액 포함)의 산출내역서 세부공종별 물량, 단위, 규격, 금액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합계		20	

✓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평가 점수	18점이상	18점미만 17점이상	17점미만 16점이상	16점미만 14점이상	14점미만
심사 점수	0	-0.5	-1.0	-1.5	-2.0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8) 입찰금액 평가

▶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 (일반공종)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의 입찰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자의 전체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이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과 대안제시 허용공종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의 합계액과 다른 경우
4. 일반공종 입찰금액이 일반공종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일반공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5. 대안제시 허용공종의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이 대안제시 허용공종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대안제시 허용공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8) 입찰금액 평가

▶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 (일반공종)

6. 전체공종, 일반공종 및 대안제시허용공종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7. 전체공종 또는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8. 전체공종 또는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8) 입찰금액 평가

▶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 (일반공종)

9. 전체공종 또는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10. 전체공종 또는 일반공종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1. 제1호내지 제14호이외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경우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8) 입찰금액 평가

■ (1단계) 현 중심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일반공종 가격평가

- 일반공종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 입찰금액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 산술평균
- 입찰금액 점수 산정 시 균형가격 초과 또는 미만을 벗어나는 정도가 같은 경우 동일한 평가점수 부여(**A·B**계수=**1**)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 하는 규정 삭제
- 단가심사 및 하도급계획은 현 중심제 평가방법을 적용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8) 입찰금액 평가

■ (2단계) 일반공종 및 대안제시 허용공종 입찰금액 가중평가 (5:5)

- (일반공종) 1단계 입찰금액* 점수를 활용(점수환산)
 - * 입찰금액(일반공종), 하도급계획, 단가심사 점수 포함
- (대안제시허용공종) 대안공종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
- 입찰금액 점수 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75%이상**이면서 최저가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로 하되, 점수폭은 체증)
- 일반공종 입찰금액 평가방식을 활용하면서, 저가투찰을 억제하는 대안제시 허용공종 입찰금액 평가산출식 결정(**A=1.0**)
- 입찰금액 평가 산출식 : $\sqrt{1 - A \times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최저가격}}{\text{예정가격} - \text{최저가격}} \right)^2} \times \text{배점}$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9) 대안제시 적정성(물량산출 적정성 포함) 평가절차

■ 제1차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에게 업체별 평가자료 배부 및 심사내용 파악 지원 등
- 대안제시, 물량산출 및 내역작성, 시공계획 등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별로 발표 하고 업체별 자료 배부

■ 심사자료 검토 및 질의서 작성·제출

- 수요기관은 심사대상자의 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별로 최대 2개 질의서를 작성·제출
- 심사위원은 자료를 검토하여 업체별 질의서*를 작성·제출
 - *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 이내
- 심사대상자는 경쟁사의 물량산출, 시공계획 및 대안제시 자료를 검토하여 경쟁사별 최대 2개 질의서를 작성·제출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9) 대안제시 적정성(물량산출 적정성 포함) 평가절차

- 우리청은 심사대상자에게 질의서 송부
- 심사대상자는 질의서 답변자료 작성·제출
- 우리청은 답변자료를 심사위원회에게 송부
-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 질의답변 요지를 심사대상 업체별로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 최종 평가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10)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절차

- 1단계 심사를 통해 5개사 선정하고, 2단계 심사점수(5개사대상) 중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심사) 공사수행능력(제안요약서 및 사회적책임 포함), 입찰금액(일반공종에 한함. 단가, 하도급심사 포함),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
 - ✓ 최고점인 자 순으로 2단계 심사 대상자 선정*(5개사)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공사수행능력(제안요약서 및 사회적책임 포함) 점수가 높은 자 → ②제안요약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③입찰금액(일반공종)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10)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절차

- 1단계 심사를 통해 5개사 선정하고, 2단계 심사점수(5개사대상) 중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2단계심사) 대안제시 적정성(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사회적책임 포함), 입찰금액(대안제시허용공종 및 일반공종, 하도급계획(대안제시 허용공종)) 평가
 - ✓ 2단계 심사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대안제시 적정성 (제안서평가, 물량심사, 사회적책임 포함) 점수가 높은 자 → ②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 → ③입찰금액(전체공종)이 낮은 자

III.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1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대안제시허용공종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음
- 발주기관이 당초 관급자재에서 대안제시허용을 위해 사급자재로 변경한 품목 및 입찰 시 대안제시허용공종 공사비에 포함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낙찰이후 관급금액으로 변경
 - ✓ 입찰자의 과소계상 등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
- 공기단축 제안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에서 공기단축 비중을 고려 수요기관 및 계약자간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기간을 재산정

IV. 질의응답

질 의 응 답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 042-724-7085

김곤 주무관 042-724-7254

(gony018@korea.kr)



종합심사낙찰제(낙찰자결정방법 개선) 시범사업 심사기준



I.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낙찰자 결정

-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 동점인 경우, 낙찰자 결정 순위 비교 >

순위	현행	⇒	시범사업 시행안
1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좌동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3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		좌동
4	추첨		좌동

II. 균형가격 산정방법 개선

<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 제외범위 >

구분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
입찰자수	20개 초과시	상위 100분의 20이상, 하위 100분의 20이하 제외	좌동
	10개이상 20개이내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10이하 제외	좌동
	10개미만	상위 100분의 50이상, 최하위 제외	좌동
기타	입찰금액이 예정 가격의 100 분의 88 초과	제외	⇒ 제외하지 않음



Thank You !

